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간 업무협력 약정

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는,

해외건설 산업 제반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 건설업계간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협력의 범위

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는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업무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가. 주요 해외건설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나. 해외건설 시장 동향 및 프로젝트 정보 교환
다. 신임 공관장 및 외교관(주재관 포함) 부임 전 해외건설 현안 브리핑
라. 외국 주요 발주처 인사와 우리 업계 인사의 방문 주선
마. 인적 교류 및 산업체 방문 주선
바. 상호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2. 사업 계획의 수립

가. 선정된 협력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과 세부적인 실무 업무의

추진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와 적절한 업무 분담에 의해 추진한다.

나. 사업 계획 수립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는 정례적 또는 비정례적인 업무 협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3. 사업의 추진

가. 주요 해외 건설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1) 외교통상부는 FTA, DDA, BIT 협상 등 주요 통상 협상 시 해외건설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에게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외건설협회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통상부에 제출할 수 있다.

3) 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 시 업계 대표들과 통상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회의 또는 연찬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나. 해외건설시장 동향 및 프로젝트 정보 교환

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해외 건설 산업 및 관련 정보, 해외건설협회와 상대국 관련 단체와의 접촉 결과, 외교통상부와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교섭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상호 교환한다.

다. 신임 공관장 및 외교관(주재관) 부임 전 업계 현안 브리핑

1) 해외건설협회는 신임 공관장 및 외교관(주재관 포함)이 부임하기 전에 주재국의 건설시장 현황과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재국 정부와의 업무 협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재국 진출 건설기업인들과의 직접 접촉 채널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2) 해외건설협회는 상기 채널의 상설화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라. 외국 주요 발주처 인사와 우리 업계 인사간 방문 주선

1) 외교통상부는 해외건설협회에 대해 외국의 건설 관련 부처 각료 및 사절단 등 주요 인사의 우리나라 방문 시 동 협회 및 소속 회원사의 방문 주선을 의뢰할 수 있다.

2) 해외건설협회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해외건설협회 고위 간부의 외국 방문 시 외국정부 주요인사 면담 일정 주선을 의뢰할 수 있다.

마. 인적교류 및 산업체 방문 주선

1) 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는 상호 이해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일정 기간 상호 파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해외건설협회는 외교통상부 소속 직원들의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체 방문을 주선할 수 있다.

바. 상호 교육 프로그램 실시

1) 외교통상부는 해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한다.

2) 해외건설협회는 외교통상부 소속 직원들의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및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가하는 해외 건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한다.

4. 경비 부담

제반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내외에서 소요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의 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다.

5. 사업 평가 및 포상

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는 매년 사업성과를 공동 평가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공이 큰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6. 간사 및 기타

가. 해외건설협회와 외교통상부는 본 약정 발효 후 10일 이내에 각각의 간사를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어느 일방 당사자의 간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 1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타방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본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7.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이 약정은 2007년 7월 18일부터 발효하여 계속 유효하며, 각 당사자는 3개월 전에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2007년 7월 18일 외교통상부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원본 각 2부에 서명하였다.

해외건설협회 회장	외교통상부 장관
이 용 구	송 민 순